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2005. 3. 8.
행정위원회

1. 審查經過.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2월 18일 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5년 3월 2일 회부
다. 상정일자 : 2005년 3월 7일
제111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정진)

가. 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의 취지에 맞추어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시행하고 보호·육성하고자, 2004.3.1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 구체적인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의 사업대상 등을 명시함으로써 구민들의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을 적극 보호·육성코자 함.

나. 주요내용

-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사업과 보조금지급 대상사업의 범위, 방법 등을 별표 1을 신설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명기 함(제4조제2항)
- 제5조의 제3호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활동”으로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으며,
- 제6조의 별표1을 별표2로 수정하고 과목 추가 및 삭제함(제6조)
- 생활체육·건전여가교실의 운영은 무료강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함(제9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3조(별첨)
- 협의 : 자치행정과, 영등포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였음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専門委員 : 김찬재)

- 가. 김영진 의원의 열여섯 분 의원께서 2004. 12. 9 발의하신 본 조례 개정안은 2004.3.12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의 기부금 조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전통문화예술 보호 및 계승, 세시풍속 활동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었습니다.

- 나. 김영진 의원의 열여섯 분 의원께서 개정안 발의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당초 문화체육과를 경유하여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시에는 조례에 근거 규정만 있으면 예산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나, 금년초에 개정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과에서 재협의한 결과 기부행위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세밀히 정하지 않으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배되어 각종 문화·체육예술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는 의견이었으며,
- 다. 이에 따라 진홍대상사업과 보조금 지원범위를 별표1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구민에 대한 교육과목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범위로 확대하여 법적근거의 명확화와 지속적인 문화체육활동이 가능토록 하고, 구민의 참여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무료를 원칙으로 생활체육·건전여가 교실을 운용토록 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라. 다만, 별표1의 구민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공연행사, 세시풍속에 있어 경품을 참여인원의 3% 이내 제공가능토록 하였으나, 참여인원의 불확정으로 오해의 소지가 많으므로, 경품의 규정을 삭제하거나 경품의 한도액을 총 행사비의 10% 이내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마. 별표1의 공연행사의 경우는 "참가자에게 시상금"은 "경연참가자에게 시상금"으로, 전시행사의 경우 "참가자에게 시상금"은 "공모참가자에게 시상금"으로, 세시풍속의 경우 "참가자에게 시상금"은 "경기참가자에게 시상금"으로 정하여 참가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바. 별표1의 문화행사 참가의 경우는 "영등포문화원, 영등포예술인협의회 회원 기타 구에서 선발된 인원"으로 대상자 정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 사. 별표2의 건전여가교실 과목의 경우는 "풍물놀이", "시조강습" 과목을 추가하여 전통문화예술의 계승을 촉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修正案 要旨

가. 수정요지

- 안 제4조제2항 관련 별표1의 참여인원의 불확정으로 경품의 규정을 수정하고, 참가자의 정의와 소요경비 지원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6조제1항 관련 별표2의 건전여가교실 과목에 풍물놀이, 시조 강습을 추가하여 전통문화예술을 계승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수정.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4조제2항 관련 별표1의 진홍사업대상의 구분란의 체육행사중 행사명 구민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의 대상 및 범위, 방법에 경품을 "참여 인원의 3%이내 제공가능을 총 행사비의 30% 이내"로, 구분란의 문화예술 행사개최 중 행사명 공연행사의 대상 및 범위, 방법에 경품을 "참여 인원의 3%이내 제공가능을 총 행사비의 30% 이내"로,

구분란의 문화예술 예산지원 중 행사명 세시풍속의 대상 및 범위, 방법에
경품을 “참여 인원의 3%이내 제공가능을 총 행사비의 30% 이내”로,
구분란의 문화예술 행사개최중 행사명 공연행사의 대상 및 범위,
방법에 “참가자에게 시상금을 경연참가자에게 시상금”으로
구분란의 문화예술 행사개최중 행사명 전시행사의 대상 및 범위,
방법에 “참가자에게 시상금을 공모참가자에게 시상금”으로
구분란의 문화예술 예산지원중 행사명 세시풍속의 대상 및 범위,
방법에 “참가자에게 시상금을 경기참가자에게 시상금”으로
구분란의 문화예술 예산지원중 행사명 문화행사의 참가의 대상 및
범위, 방법에
“대상 : 영등포문화원, 영등포 예술인협의회 회원, 기타 구에서 선발된
인원”추가

○ 안 제6조제1항 관련 별표2 대상과목 구분란의 교육중 전전여가교실
과목에 “풍물놀이, 시조강습”을 추가하여 수정함.

5. 審査結果 : 修正案 可決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중개 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43호
----------	------------

제출년월일 : 2005.3.7.
제출자 : 김영진 의원

1. 수정이유

경품지급시 참여인원의 불확정으로 오해의 소지가 많으므로 경품 지급의 규정과
참가자의 정의, 소요경비 지원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전통문화예술의 계승을 촉진시
키기 위하여 수정

2. 주요내용

- 안 제4조제2항 관련 별표1의 진흥사업대상의 구분란의 체육행사중 행사명
구민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의 대상 및 범위, 방법에 경품을
“참여 인원의 3%이내 제공가능을 총 행사비의 30% 이내”로
구분란의 문화예술 행사개최 중 행사명 공연행사의 대상 및 범위, 방법에
경품을 “참여 인원의 3%이내 제공가능을 총 행사비의 30% 이내”로,
구분란의 문화예술 예산지원 중 행사명 세시풍속의 대상 및 범위, 방법에
경품을 “참여 인원의 3%이내 제공가능을 총 행사비의 30% 이내”로,
구분란의 문화예술 행사개최중 행사명 공연행사의 대상 및 범위, 방법에
“참가자에게 시상금을 경연참가자에게 시상금”으로
구분란의 문화예술 행사개최중 행사명 전시행사의 대상 및 범위, 방법에
“참가자에게 시상금을 공모참가자에게 시상금”으로
구분란의 문화예술 예산지원중 행사명 세시풍속의 대상 및 범위, 방법에
“참가자에게 시상금을 경기참가자에게 시상금”으로
구분란의 문화예술 예산지원중 행사명 문화행사의 참가의 대상 및 범위 방법에
“대상 : 영등포문화원, 영등포 예술인협의회 회원, 기타 구에서 선발된 인원”
추가
- 안 제6조제1항 관련 별표2 대상과목 구분란의 교육증 전전여가교실 과목에
“풍물놀이, 시조강습”을 추가 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 수정 한다

- 안 제4조제2항 관련 별표1의 진흥사업대상의 구분란의 체육행사중 행사명
구민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의 대상 및 범위, 방법에 경품을
“참여 인원의 3%이내 제공기능을 총 행사비의 30% 이내”로
구분란의 문화예술 행사개최 중 행사명 공연행사의 대상 및 범위, 방법에
경품을 “참여 인원의 3%이내 제공기능을 총 행사비의 30% 이내”로,
구분란의 문화예술 예산지원 중 행사명 세시풍속의 대상 및 범위, 방법에
경품을 “참여 인원의 3%이내 제공기능을 총 행사비의 30% 이내”로,
구분란의 문화예술 행사개최중 행사명 공연행사의 대상 및 범위, 방법에
“참가자에게 시상금을 경연참가자에게 시상금”으로
구분란의 문화예술 행사개최중 행사명 전시행사의 대상 및 범위, 방법에
“참가자에게 시상금을 공모참가자에게 시상금”으로
구분란의 문화예술 예산지원중 행사명 세시풍속의 대상 및 범위, 방법에
“참가자에게 시상금을 경기참가자에게 시상금”으로
구분란의 문화예술 예산지원중 행사명 문화행사의 참가의 대상 및 범위 방법에
“대상 : 영등포문화원, 영등포 예술인협의회 회원, 기타 구에서 선발된 인원”
추가
- 안 제6조제1항 관련 별표2 대상과목 구분란의 교육중 건전여가교실 과목에
“풍물놀이, 시조강습”을 추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중조례안에 대한
수정대비표

개정안 : 별표 1 진흥사업대상 (제4조제2항 관련)

구분	행사명	대상 및 범위, 방법	비고
체육 행사	구민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한마음체육대회, 동민체육대회, 건강달리기대회 등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회 참가자에 대한 시상금품, 경품(참여인원의 3%이내 제공가능) 지급 • 동민체육대회시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정기
	종목별대회 개최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각 종목별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대회 등 - 내용 : 각 종목별 행사주관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정기
	체육 동호인 육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전국·시·도 단위 체육대회 등 - 내용 : 전국·시·도 단위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종목별 연합회에 대한 참가비지원 	수시
	학교체육 육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소년체전 등 각종대회 및 꿈나무육성학교 - 내용 : 소년체전 등 각종대회 참가 및 우수꿈나무육성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수시
	체육교실 육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구 및 동 생활체육교실 등 - 내용 : 구민 체위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교육의 무료 또는 유료강좌 실시 	연중
문화예술 행사개최	공연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여의도한강축제, 작은문화마당(선유도 등 야외공연), 구민노래자랑, 좋은영화무료상영 등 - 연예인 초청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정한 문화예술의 무료공연, 자유공연(주민자율참여공연), 생활체육시범공연 - 경연대회의 경우 참가자에게 시상금, 시상품, 관객에게 경품(참여인원의 3%이내 제공가능) 지급 	정기
	전시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목련전, 영등포사진공모전 - 문학, 미술(용용미술 포함), 서예, 사진 등 예술인작품 무료전시회 - 작품집 발간 관람 예술인에게 배부 - 공모전 경우 참가자에게 시상금, 시상품 지급 	정기
	문화산업단체 초청공연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의 보호·육성을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정한 문화산업단체 및 문화예술단체 초청 문화예술 무료공연 	수시
문화예술 예산지원	세시풍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래 세시풍속 행사(쥐불놀이, 척사대회, 단오 절행사 등) - 참가자에게 시상금, 시상품, 경품(참여인원의 3%이내 제공가능) 지급 	정기
	공연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예술인협의회 및 각 예술단체, 관내 교육기관(초, 중, 고)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정한 문화예술공연 	수시
	전시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예·사진·미술협회 등 예술단체 전시회 	수시
	전통문화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군당 : 상산전(영등포3동), 당산동부군당(당산2동), 방학곳지부군당(신길2동), 도당(신길3동) - 각 제주 또는 책임관리인에게 행사지원금 지원 	정기
	문화행사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타자치단체 문화행사 참가 및 초청 소요경비 	수시

국내·외 자매결연 단체행사	문화행사 개최, 참가	- 대상 : 문화예술인, 일반인, 학생, 공무원 등 - 상호 문화행사 개최 및 참가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수시
	지역축제 행사교류	- 대상 : 자매결연지역 일반인 및 공무원 등 - 상호 지역행사 참가 및 초청 - 차량 및 숙식비 등 행사진행 소요경비 지원	수시
	어린이문화 체험단 상호교류	- 대상 : 자매결연지역 초·중·고등학교 어린이 - 상호 문화체험행사 참가 및 초청경비 - 숙식비, 관람경비, 선물구매비, 차량지원등 행사 소요경비	수시
	스포츠교류	- 대상 : 자매결연지역 일반인 및 공무원 - 상호 스포츠교류 - 행사진행 소요경비 지원	수시
	기타행사 지원	- 대상 : 영동포구교구협의회원, 구·동간부, 신우회원 등 - 관내교회 및 구청개최시 행사지원금 지원	수시

개정안 : 별표 2 대상과목(종목) (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과 목(종 목)	비 고
교 육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교실	축구, 뜻살, 족구, 배구, 농구, 야구, 탁구, 마라톤, 불링, 테니스, 배드민턴, 스쿼시, 수영, 게이트볼, 생활체조, 에어로빅, 단전호흡, 기공체조, 요가, 복싱다이어트, 검도, 태권도, 헬스, 활쏘기, 자전거, 스케이트(인라인), 스키, 골프, 암벽등반, 요트(용선), 원드서핑, 사격 등
	전전여가교실 (레크레이션, 문화예술, 교양기술)	건강디스코(차밍댄스), 댄스스포츠, 포크댄스, 노래교실, 바둑, 장기, 종이접기, 탈춤, 전통민속놀이 등 무용(발레, 한춤 등), 사물놀이, 사진, 공예, 회화, 서예, 족보학, 전통예절강좌 등 茶道, 어학강좌, 요리, 이미용, 수지침, 발マ사지, 기타 교양강좌 등

수정안 : 별표 1 진흥사업대상 (제4조제2항 관련)

구분	행사명	대상 및 범위, 방법	비고
체육행사	구민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 대상 : 한마음체육대회, 동민체육대회, 건강달리기대회 등 - 내용 · 대회 참가자에 대한 시상금품, 경품(총 행사비의 30% 이내 제공가능) 지급 · 동민체육대회시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정기
	종목별대회 개최 및 지원	- 대상 : 각 종목별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대회 등 - 내용 : 각 종목별 행사주관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정기
	체육 동호인 육성·지원	- 대상 : 전국·시·도 단위 체육대회 등 - 내용 : 전국·시·도 단위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종목별 연합회에 대한 참가비지원	수시
	학교체육 육성·지원	- 대상 : 소년체전 등 각종대회 및 꿈나무육성학교 - 내용 : 소년체전 등 각종대회 참가 및 우수꿈나무육성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수시
	체육교실 육성·지원	- 대상 : 구 및 동 생활체육교실 등 - 내용 : 구민 체위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교육의 무료 또는 유료강좌 실시	연중
문화예술 행사개최	공연행사	- 대상 : 여의도한강축제, 작은문화마당(선유도 등 야외공연), 구민노래자랑, 좋은영화무료상영 등 - 연예인 초청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정한 문화예술의 무료공연, 자유공연(주민자율 참여공연), 생활체육시범공연 - 경연대회의 경우 경연참가자에게 시상금, 시상품, 관객에게 경품(총 행사비의 30%이내 제공가능) 지급	정기
	전시행사	- 대상 : 목련전, 영등포사진공모전 - 문학, 미술(용·용미술 포함), 서예, 사진 등 예술인 작품 무료전시회 - 작품집 발간 관람 예술인에게 배부 - 공모전 경우 공모참가자에게 시상금, 시상품 지급	정기
	문화산업단체 초청공연행사	- 문화예술의 보호·육성을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정한 문화산업단체 및 문화예술단체 초청 문화예술 무료공연	수시
문화예술 예산지원	세시풍속	- 전래 세시풍속 행사(쥐불놀이, 쇠사대회, 단오 절행사 등) - 경기참가자에게 시상금, 시상품, 경품(총 행사비의 30% 이내 제공가능) 지급	정기
	공연행사	- 영등포예술인협의회 및 각 예술단체, 관내 교육기관(초, 중, 고)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정한 문화예술공연	수시
	전시행사	- 서예·사진·미술협회 등 예술단체 전시회	수시
	전통문화행사	- 부군당 : 상산전(영등포3동), 당산동부군당(당산2동), 방학곳 지부군당(신길2동), 도당(신길3동) - 각 제주 또는 책임관리인에게 행사지원금 지원	정기
	문화행사참가	- 국내 타자치단체 문화행사 참가 및 초청 소요경비 - 대상 : 영등포 문화원, 영등포 예술인협의회 회원, 기타 구에서 선발된 인원	수시

국내·외 자매결연 단체행사	문화행사 개최, 참가	- 대상 : 문화예술인, 일반인, 학생, 공무원 등 - 상호 문화행사 개최 및 참가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수시
	지역축제 행사교류	- 대상 : 자매결연지역 일반인 및 공무원 등 - 상호 지역 행사 참가 및 초청 - 차량 및 숙식비 등 행사진행 소요경비 지원	수시
	어린이문화 체험단	- 대상 : 자매결연지역 초·중·고등학교 어린이 - 상호 문화체험 행사 참가 및 초청경비	수시
	상호교류	- 숙식비, 관람경비, 선물구매비, 차량지원등 행사 소요경비	
	스포츠교류	- 대상 : 자매결연지역 일반인 및 공무원 - 상호 스포츠교류 - 행사진행 소요경비 지원	수시
기타행사 지원	조찬기도회	- 대상 : 영등포구교구협의회원, 구·동간부, 신우회원 등 - 관내교회 및 구청개최시 행사지원금 지원	수시

수정안 : 별표 2 대상과목(종목) (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과 목(종 목)	비 고
교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교실	축구, 뜻살, 족구, 배구, 농구, 야구, 탁구, 마라톤, 불링, 테니스, 배드민턴, 스쿼시, 수영, 게이트볼, 생활체조, 에어로빅, 단전호흡, 기공체조, 요가, 복싱다이어트, 검도, 태권도, 헬스, 활쏘기, 자전거, 스케이트(인라인), 스키, 골프, 암벽등반, 요트(용선), 원드서핑, 사격 등
육	건전여가교실 (레크레이션, 문화예술, 교양기술)	건강디스코(차밍댄스), 댄스스포츠, 포크댄스, 노래교실, 바둑, 장기, 종이접기, 탈춤, 전통민속놀이 등 무용(발레, 한춤 등), 사물놀이, 사진, 공예, 회화, 서예, 족보학, 전통예절강좌, 풋풀놀이, 시조강습 등 茶道, 어학강좌, 요리, 이미용, 수지침, 발맞사지, 기타 교 양강좌 등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43
------------------	-----

제출년월일 : 2005. 2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의 취지에 맞추어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시행하고 보호·육성하고자, 2004.3.1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 구체적인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의 사업대상 등을 명시함으로써 구민들의 문화 예술 및 체육활동을 적극 보호·육성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사업과 보조금지급 대상사업의 범위, 방법 등을 별표 1을 신설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명기 함(제4조제2항)
- 나. 제5조의 제3호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활동”으로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으며,
- 다. 제6조의 별표1을 별표2로 수정하고 과목 추가 및 삭제함(제6조)
- 라. 생활체육·건전여가교실의 운영은 무료강좌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함(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3조(별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협의 : 자치행정과, 영등포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였음
- 라. 기타 : 조례(안) 별첨
 - (1) 입법예고(2005.02.03 ~ 02.12) 결과 : 의견수렴
 -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중개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문화예술및생활체육진흥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분개정)

제4조(진흥사업대상과 보조금지원)제1항1호 및 제1항 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범 구민 문화예술·체육행사(동민체육대회 포함) 개최 및 지원

8. 기타 문화예술·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개최 및 지원

제4조(진흥사업대상과 보조금지원)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 각호의 구체적인 사업대상, 범위, 방법 및 지원내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교실기능)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문화예술 종목의 문화예술활동(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 발표 등) 국내·외 교류

제6조(교육과목 등)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5조제1호, 제2호 규정에 의한 교육 대상과목은 구민의 선호도, 내용의 다양화, 보급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며 대상과목은 별표 2와 같고, 그외 과목추가 선정은 구청장 방침으로 한다.

제6조(교육과목 등) 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 1 별첨)

별표 2 생활체육교실에 “풋살, 기공체조, 요가, 복싱다이어트, 활쏘기, 자전거, 스케이트(인라인), 윈드서핑, 사격”을 추가한다.

별표 2 건전여가교실에 “족보학, 전통예절강좌”를 추가한다.

별표 2 구분의 “공연 발표 전시”란을 삭제한다.(별표 2 별첨)

제9조(수강료)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실의 효율 운영과 교육의 적극 참여 유도를 위하여 무료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거 이용자에게 장소사용료 또는 교실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수강료로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진흥사업대상과 보조금지원) ①제3조제2항에서의 진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 구민 문화예술·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2. ----- 3. ----- 4. ----- 5. ----- 6. ----- 7. ----- 8. 기타 문화예술·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②제1항 각호에 대하여는 문화예술·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진흥사업대상과 보조금지원) ①제3조제2항에서의 진흥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범 구민 문화예술·체육행사(<u>동민체육대회 포함</u>) 개최 및 지원 2. ----- 3. ----- 4. ----- 5. ----- 6. ----- 7. ----- 8. 기타 문화예술·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u>개최 및 지원</u> ②제1항 각호의 구체적인 사업대상, 범위, 방법 및 지원내역은 <u>별표 1과 같다.</u>
제5조(교실기능) 교실의 기능은 각호와 같다. 1. ----- 2. ----- 3. 교육과목의 발표(또는 공연, 전시) 및 국내·외 교류	제5조(교실기능) 교실의 기능은 각호와 같다. 1. ----- 2. ----- 3. <u>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문화예술 종목의 문화예술활동(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 전수, 발표 등) 및 국내·외 교류</u>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교육과목 등)</p> <p>① 제5조제1호, 제2호, 제3호 규정에 의한 교육, 발표, 공연, 전시 대상과목은 ----- 선정한다.</p> <p>대상과목은 별표 1과 같다.</p> <p>② 별표 1 대상과목외 과목추가 선정은 구청장 방침으로 한다.</p>	<p>제6조(교육과목 등)</p> <p>① 제5조제1호, 제2호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과목은 ----- 선정하며 대상과목은 별표2와 같으며, 그외 과목추가 선정은 구청장 방침으로 한다.</p> <p>② 항 삭제</p>
<p>제9조(수강료)</p> <p>① 교실의 효율 운영과 교육의 적극 참여 유도를 위하여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거----- 수강료로 징수할 수 있다.</p>	<p>제9조(수강료)</p> <p>① 교실의 효율 운영과 교육의 적극 참여 유도를 위하여 무료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거----- 수강료로 징수할 수 있다.</p>
<p>별표 1 생활체육교실 과목(종목)</p> <p>별표 2 공연 발표 전시의 과목(종목)</p> <p>연극, 음악회, 영화상영, 구민노래자랑, 사물놀이, 풍물놀이</p> <p>기타 회화, 무용 등 건전여가교실 일부 종목</p>	<p>별표 1 신설</p> <p>별표 2 생활체육교실 과목(종목)에 “풋살, 기공체조, 요가, 복싱다이어트, 활쏘기, 자전거, 스케이트(인라인), 원드서핑, 사격” 추가 건전여가교실 과목(종목)에 “족보학, 전통예절 강좌” 추가 “공연발표전시”란 삭제</p>

별표 1 진통사업대상 (제4조제2항 관련)

구분	행사명	대상 및 범위, 방법	비고
체육행사	구민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한마음체육대회, 동민체육대회, 건강달리기대회 등 - 내용 : 대회 참가자에 대한 시상금, 경품(참여인원의 3%이내 제공가능) 지급 - 동민체육대회시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정기
	종목별대회 개최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각 종목별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대회 등 - 내용 : 각 종목별 행사주관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정기
	체육 동호인 육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전국·시·도 단위 체육대회 등 - 내용 : 전국·시·도 단위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종목별 연합회에 대한 참가비지원 	수시
	학교체육 육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소년체전 등 각종대회 및 꿈나무육성학교 - 내용 : 소년체전 등 각종대회 참가 및 우수 꿈나무육성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수시
	체육교실 육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구 및 동 생활체육교실 등 - 내용 : 구민 체위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교육의 무료 또는 유료강좌 실시 	연중
문화예술 행사개최	공연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여의도한강축제, 작은문화마당(선유도 등 야외공연), 구민노래자랑, 좋은영화무료상영 등 - 연예인 초청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정한 문화예술의 무료공연, 자유공연(주민자율참여공연), 생활체육시범공연 - 경연대회의 경우 참가자에게 시상금, 시상품, 관객에게 경품(참여인원의 3%이내 제공가능) 지급 	정기
	전시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복련전, 영등포사진공모전 - 문학, 미술(웅용미술 포함), 서예, 사진 등 예술인작품 무료전시회 - 작품집 발간 관람 예술인에게 배부 - 공모전 경우 참가자에게 시상금, 시상품 지급 	정기
	문화산업단체 초청공연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의 보호·육성을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정한 문화산업단체 및 문화예술단체 초청 문화예술 무료공연 	수시
문화예술 예산지원	세시풍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래 세시풍속 행사(쥐불놀이, 척사대회, 단오절행사 등) - 참가자에게 시상금, 시상품, 경품(참여인원의 3%이내 제공가능) 지급 	정기
	공연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등포예술인협의회 및 각 예술단체, 관내 교육기관(초, 중, 고)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정한 문화예술공연 	수시
	전시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예·사진·미술협회 등 예술단체 전시회 	수시
	전통문화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군당 : 상산전(영등포3동), 당산동부군당(당산2동) 방학곳지부군당(신길2동), 도당(신길3동) - 각 제주 또는 책임관리인에게 행사지원금 지원 	정기
	문화행사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타자치단체 문화행사 참가 및 초청 소요경비 	수시

국내·외 자매결연 단체행사	문화행사 개최, 참가	- 대상 : 문화예술인, 일반인, 학생, 공무원 등 - 상호 문화행사 개최 및 참가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	수시
	지역축제 행사교류	- 대상 : 자매결연지역 일반인 및 공무원 등 - 상호 지역 행사 참가 및 초청 - 차량 및 숙식비 등 행사진행 소요경비 지원	수시
	어린이문화 체험단 상호교류	- 대상 : 자매결연지역 초등·고등학교 어린이 - 상호 문화체험 행사 참가 및 초청경비 - 숙식비, 관람경비, 선물구매비, 차량지원 등 행사 소요경비	수시
	스포츠교류	- 대상 : 자매결연지역 일반인 및 공무원 - 상호 스포츠교류 - 행사진행 소요경비 지원	수시
	기타행사 지원	- 대상 : 영동포구교구협의회원, 구·동간부, 신우회원 등 - 관내 교회 및 구청 개최시 행사지원금 지원	수시

별표 2 대상과목(종목) (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과 목(종 목)	비 고
교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교실	축구, 풋살, 축구, 배구, 농구, 야구, 탁구, 마라톤, 블링, 테니스, 배드민턴, 스쿼시, 수영, 게이트볼, 생활체조, 에어로빅, 단전호흡, 기공체조, 요가, 복싱다이어트, 검도, 태권도, 헬스, 활쏘기, 자전거, 스케이트(인라인), 스키, 골프, 암벽등반, 요트(용선), 윈드서핑, 사격 등
육	건전여가교실 (레크레이션, 문화예술, 교양기술)	건강디스코(차밍댄스), 댄스스포츠, 포크댄스, 노래교실, 바둑, 장기, 종이접기, 탈춤, 전통민속놀이 등 무용(발레, 한춤 등), 사물놀이, 사진, 공예, 회화, 서예, 족보학, 전통예절강좌 등 茶道, 어학강좌, 요리, 이미용, 수자침, 발맛사지, 기타 교양강좌 등

<관계법령>

문화예술 : 문화예술진흥법

제1장 總則

제1조 (目的)

이 法은 文化藝術의 振興을 위한 사업과 活動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傳統文化藝術을 계승하고 새로운 文化를創造하여 民族文化의 發達에 이바지함을 그 目的으로 한다.

제2조 (定義)

①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 1.12>

1. 文化藝術振興事業 (文藝振興事業) : 文化藝術의 發展과 發達을 목적으로 하는 計劃 및 推進의 行為를 말한다.
2. 文化藝術活動 (文藝活動) : 文化藝術振興事業을 목적으로 하는 計劃 및 推進의 行為를 말한다. <개정 2003.5.27>
3. "文化施設"이라 함은 公演, 展示 및 文化普及傳受 등 文化藝術活動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施設을 말한다.

②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文化施設의 종류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2000.1.12]

제3조 (施策과 励獎)

- ① 文化藝術振興事業의 推進에 대한 鼓勵策 (獎勵策) : 一般의 文化藝術에 대한 民眾의 文化藝術活動에 대한 鼓勵策를 말한다.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藝術振興施策은 民眾生活의 質的 향상을 위한 健全生活文化의 開發·普及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머리 文化藝術機關 및 團體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文化藝術의 振興에 관한 施策과 計劃의 施行에 관하여 文化觀光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國聯機關 및 團體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改正 2000.1.12]